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제정	1997. 12. 1.
개정	2000. 3. 3.
	2001. 3. 23.
	2003. 5. 12.
	2004. 3. 19.
	2005. 3. 4.
	2008. 3. 24.
	2020. 2. 3.

1. 교원의 신규채용 시기

교무처 및 대학의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공개 채용 분야 추천

교원의 채용 분야 및 담당 교과목을 학부(과)로부터 제출 받아 학부(과) 및 대학의 교육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채용분야를 추천한다.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3. 예비 심사

교무부학장은 응모자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별 종류 및 배점

심사의 종류 및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심 사 단 계				배 점	합격 기준	비고
1단계	기초 및 전공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상·중·하	“중” 이상	
			연구실적물 내용 평가	40	80% 이상	
		학부(과) 심사위원	총괄연구업적	20	80% 이상	
2단계	면접 심사	학부(과) 심사위원	공개 발표	20		
			교육 및 연구 계획	20		
		대학인사위원	임용 적합성	가·부	가	
합 계				100	80% 이상	

5. 심사위원 선정

가.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대학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으로부터 박사학위논문의 지도교수, 공저자, 추천인을 제외한 학내인사 6인 학외인사 4인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 받아 이 중 5인을 선정하되, 학외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단, 본교 교원으로서 동일 모집 분야를 심사하게 할 수 없거나 모집 분야에 사정이 있을 때는 본교 교원 대신 학외 인사를 선정한다.

나. 학부(과) 심사위원

학부(과)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이 학부 소속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다만, 10인 이상 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하며, 학부(과) 내에 교과 과정상의 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2/3이상을 해당 전공 교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과)장이 된다.

6. 연구 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점수

가.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은 정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대학의 해당전공 과목의 교재 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 수준향상에 공헌하는 단행본의 저서 등이다. 단, 조경학전공에 한해 공인된 국제설계경기의 상위입상(3위 이내)작품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설계경기의 최상위 당선 작품도 가능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적물 저자 구분		인정점수	비고
논문, 저서 등	설계작품(조경학전공)		
단독 연구	단독 설계	100점	
제1저자, 교신저자	2인 공동설계	70점	
	3인 공동설계	50점	
	4인 이상 공동설계	30점	

- 나.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은 응모자가 연구실적물의 단독연구저자, 공동연구의 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3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경학전공의 경우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 라. 학위 논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서로 중복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그 중 응모자가 지정하는 하나의 연구 실적물만 인정한다.
- 마. 게재예정증명서는 출판사, 권(호), 쪽수가 명시된 논문과 전자저널에 발간이 예고된 논문만 인정하고, 공개발표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심사 단계별 평가 방법 및 절차

가.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 1) 기초심사는 5인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모집 분야와의 적합성 여부를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하여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이 “중(2.0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전공심사는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심사와 학부(과) 심사로 이루어진다. 연구실적물 내용에 대하여 5인의 심사위원이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로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이 “우(4.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한다. 학부(과)심사는 총괄연구업적을 평가한다.
- 3) 총괄연구업적 평가
총괄연구목록과 자기 소개서에 수록된 연구 업적 및 수상 경력 등을 통하여 응모자의 총괄연구업적을 점수화한다. 단, 연구 경력이 많은 응모자가 연구 경력이 적은 응모자 보다 일방적으로 높

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통산 점수가 아닌 연간 점수로 평가한다.

나. 면접 심사(2단계)

- 1) 면접 심사는 학부(과)심사위원이 공개 발표, 자기 소개서, 교육 및 연구 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며, 면접심사대상자 선정은 1단계 심사 평가결과에 의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학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개 발표 평가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종합하여 선정된 3배수 이내의 응모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과 교육 계획에 대한 공개 발표를 실시하고, 학부(과)심사위원 5인 이상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의 수준과 전문성, 국제화 및 의사 전달 능력, 개성과 품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교육 및 연구 계획서 평가

교과목 이수형태 및 성적, 자기 소개서, 교육 및 연구 계획서 등을 통하여 학생 교육 및 연구 지도 능력과 계획을 점수화한다.

다. 대학인사위원회 심사

- 1) 대학인사위원회는 2단계 면접심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대상자 개인별로 아래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임용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평가항목	배점	비고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법령준수 등	25	
학생지도 및 교육 능력	25	
연구실적	25	
연구실적목표의 국제적 수준 정도	25	
합계	100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법령준수 등”, “학생지도 및 교육 능력” 및 “연구실적”은 제출서류,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공개발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나) “연구실적목표의 국제적 수준 정도”는 대상자가 임용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임용 후 4년간의 연구실적목표(논문발표건수 및 투고 예상학술지, 총괄 연구실적 환산점수)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연구실적목표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한다.

- 2) 임용적합성에 대한 배점 100점 만점 중 인사위원별 심사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하며, 출석위원의 2/3이상이 “적격”으로 평가를 한 경우 응모자의 임용적합성에 대하여 “가결”한다.

- 3) 인사위원회는 임용적합자로 결정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경력, 업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학장에게 추천한다.

부칙(제63호)

이 지침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호)

이 지침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호)

이 지침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며, 2020년 제1차 대학교원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